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횡성군

내 용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舊「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舊「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서 단서조항에서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의 추정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그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창업중소기업 (주)○○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횡성군 ○○면 ○○리 00-0번지’의 건물을 취득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함에 따라 재산 취득 시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중인 2016.9.20.일 현재까지 취득세 1건 / 65,655,070원을 추징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사후관리 및 취득세 추징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추징내역 (단위 : 원)

법인명	법인번호	과세물건	취득일	매각일	추징세액	추징사유
(주)○○	000000-0000000	○○면 ○○리 00-0 (건물 3327.94㎡)	12.12.24	15.04.07	65,655,070	취득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횡성군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음에도 추징하지 않은 취득세 1건 / 65,655,070원을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